

1. 개정이유

관보시스템을 통한 직접 등록 방식으로 변경된 관보 게재 의뢰 절차를 반영하고, 접수일자 기준으로 관보 게재일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보 게재 의뢰절차(안 제2조)

관보시스템을 통해 게재문을 직접 등록하는 변경된 게재 의뢰 절차 반영(안 제2조)

나. 관보 게재일(안 제3조)

접수일 14시 기준으로 3일 또는 4일 후 게재되던 것을 접수일(18시)로부터 3일 후 게재로 조정

다. 정정절차(안 제4조)

관보시스템을 통해 정정 게재문을 직접 등록하는 변경된 정정 절차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특기할 사항 없음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보 게재의 근거 및 관보 게재일을 적어 공문으로”를 “전자관보시스템(<https://gwanbo.go.kr>)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 및 게재 근거법령을 선택하고 관보에 실을 게재문을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문”을 “전자관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보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
3. 관보에 게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 공문, 단 온나라시스템 연계기안을 통한 내부결재시에는 공문 첨부는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관보의 게재일은 접수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며, 접수일의 마감 시간은 당일 18시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정문을 작성하여 공문으로”를 “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을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게재 의뢰)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u>관보 게재의 근거 및 관보 게재일을 적어 공문으로 의뢰</u>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u>공문에 첨부</u> 해야 한다.	제2조(게재 의뢰) ----- ----- <u>전자관보시스템(http://gwanbo.go.kr)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 및 게재 근거법령을 선택하고 관보에 실을 게재문을 작성하여 ---. --- 전자관보시스템-----.</u>
1. <u>관보에 실을 게재문</u>	1. 「관보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u>총리령·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u>
2. (생략) <u><신설></u>	2. (현행과 같음)
	3. <u>관보에 게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내부결재 공문, 단 온나라시스템 연계기안을 통한 내부결재시에는 공문 첨부는 생략할 수 있다.</u>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제3조(관보 게재 접수 및 게재일)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u>관보의 게재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u>	② <u>관보의 게재일은 접수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로 하며, 접수일의 마감 시간은 당일 18시까지로 한다.</u>
1. <u>14시 전에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3일째 되는 날</u>	

<u>2. 14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4일째 되는 날</u> ③ (생략) 제4조(관보의 정정) ① 관보의 정정은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u>정정문을 작성하여 공문으로</u> 요청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관보 게재료의 납부 방법) <u>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보 게재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u> <u>제6조 ~ 제11조</u>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관보의 정정) ① ----- ----- ----- <u>전자관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보 게재일을 선택하고 정정문을 작성하여</u> -----. ②·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제5조 ~ 제10조</u> (현행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	--